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4-123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라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제한을 명한 통지서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공시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른 정보의 처리 거부·정지·제한(삭제) 명령 통지

1.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프레스아리랑 (PressArirang)	25N Marengo Ave Pasadena, CA 91101 USA

2.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성명(명칭)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법적 근거
프레스아리랑 (PressArirang)	프레스아리랑 홈페이지(pressarirang.org) 내 게시되어 있는 3개의 게시글은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불법정보임	해당 정보의 처리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해당 게시물 삭제) 명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 해당 게시글(URL)은 불법정보로 공개 부적합하여 게재하지 않으니, 담당자에게 별도 확인 필요

3. 위와 같이 귀 단체(사)의 정보통신망서비스에 게시되어 있는 게시물 중 법에서 금지하는 내용의 불법 정보에 해당하는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시정요구(해당 게시물 삭제)를 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어,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귀 단체(사)에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3항에 따라 해당 게시물에 대한 처리거부(삭제)를 명하오니, 2024. 12. 19.(목)까지 삭제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알려주시기 바라고, 관련 해당 게시물과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유정민주무관(전화: 02-2110-1566, jmevegy1013@korea.kr)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기한 내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3조(벌칙)제5에 따라 고발조치 되오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